Powerful pohang

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	기	관	의	장	
선					
람					



포항시보

제 765호 2010. 1. 26(화)

회				
람				

발행 : 포항시 편집 : 홍보담당관(☎270-2234)

190×268 신문용지 70g/m²

시장 지시(훈시)사항

- 2010. 1. 25(월) 간부회의 -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훈 시 (1, 25)	 아이티 성금모금, 헌혈 동참에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림 아이티 지진사태와 관련하여 자치단체중 처음 성금 모금활동 전개하였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음. 성금모금 활동, KBS 헌혈운동에 동참해 주신 직원 들게 감사드림. 	전 부 서
	 G20 재무장관회의 경주개최에 따라 관심 갖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G20 재무장관회의 경주개최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경주와 인근 포항지역을 찾을 것임. 손님 방문 등에 따라 포항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각 부서별 관심을 갖고 손님맞이 등 대책 마련 및 추진하기 바람. 	전 부 서 관광진흥과 국제협력팀
	○ KTX 포항노선 확정 보고회(2.3일) 준비 철저	기획예산과
	○ 예산 조기집행 철저	전 부 서 (기획예산과)
	 ○ 제48회 도민체전 준비 철저 - 7월 개최되는 도민체전, 해양스포츠 대전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담당·과장·국장이 챙기도록 바람. 	체육지원과
	○ 구제역 확산에 따른 예방활동 철저	농축산과
	 겨울철 가뭄에 따른 대책 마련 추진 저수율이 예년에 비해 20% 부족한 상황이니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, 특히 영농에 차질 없도록 하기 바람. 	상수도과 농축산과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			
훈 시 (1, 25)					
	 보안등, 가로등 관리 철저 보안등, 가로등에 대해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, 특히 수동으로 작동되는 보안등에 대해서 대 낮에 점등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대책 마련바람. 	건설과 남·북구청 읍면동			
	○ 포항시-전국학교운영위원회총연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적극 홍보바람	관광진흥과			
	○ 동빈내항 감정 및 보상을 서둘러서 준공시기를 앞당기 도록 조치 바람.	동빈내항복원팀			
지 시 10-008	 시내버스 운행중 안내 멘트를 영어로 가능토록 검토 및 추진 바람 시민들의 글로벌 마인드 함양이 가능토록 시내버스 정차 안내 멘트를 우리말과 외국어(영어부터)로 가능토록 검토 추진 바람. 	교통행정과			
지 시 10-009	 ○ '은하수공원'(장례문화센터) 벤치마킹하여 우현화장장 관리시스템에 접목 및 도입 바람 - 충남 연기군의 은하수공원 운영 및 관리 시스템을 벤치마킹 하기바라며, 우리시 우현화장장에 접목 및 선진시스템을 반영토록 할 것. 	저출산고령화대책고			
지 시 10-010	 ○ 초등학교 돌봄교실 중단 없도록 챙겨주시고 보고하기 바람 - 도예산 지원이 없다면 시예산 투입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운영(보육실 운영비)에 차질 없도 록 하고, 이에 대해 보고해주기 바람. 	여성가족과			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지 시 10-011	○ 훈춘시에 공무원 파견을 검토 추진 - 능력있는 공무원을 선발 및 파견하여 훈춘, 장춘, 길림, 심양 등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.	자치행정과 국제협력팀

부시장 지시사항

- 2010. 1. 25(월) 간부회의 -

관 리 번 호	지 시 내 용	주관부서
훈 시 (1, 25)	 ○ 공무원의 주인의식 함양 및 친절교육 강화 - 어디에 있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, - 업무에 대하여 욕심을 가지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태도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공부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람. - 특히 민원인에 대한 친절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. ○ 시가지 간판 정비 - 무질저한 돌출 간판이 많으므로 신규 간판에 대해 규격화하는 내용의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도시미관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. - 크기가 작고, 아름다운 디자인에 초점을 맞추고, 대기업, 대도시 간판을 벤치마킹하여 정비하기 바람. 	전 부 서

고 시

포항시 고시 제2010 - 2호

포항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준공된 지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1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(용도지역의 지정)된 사항을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포항시장 박 승 호

2010년 1월 25일

1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등 작성 취지

- o「어촌·어항법」제10조에 의거 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1조 의거 용도지역이 지정됨에 따라 동 내용을 고시하고
- o 또한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·고시함으로써 토 지이용규제를 투명화 함

2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
ㅇ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
7 H		구성비	비고		
구 분	기정	변경	변경후	(%)	n 12
합 계	1,224,847,000	_	1,224,850,471	100.00	
도시지역	388,359,691	_	388,359,691	31.71	
관리지역	166,300,265	증 3,471	166,303,736	18.05	
농림지역	643,127,339	_	643,127,339	48.03	
자연환경보전지역	27,059,705	-	27,059,705	2.21	

ㅇ 용도지역 지정 사유서

도면	A) 7)	용도지역		면적	7767 377	
표시 번호	위 치	기정	변경	(m²)	결정(변경)사유	
1	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장길리 169-5번지	-	관리지역	3,471	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라 공유 수면을 매립하여 준공된 어항 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41조 에 의거 지정된 용도지역을 고시	

- 3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역) 결정 및 지형 도면 등 : 붙임 도면과 같음(도면 실음 생략)
- 4.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 (http://luris.moct.go.kr)에서 열람 가능하며,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포항시청(도시계획과 054-270-3466)에 비치된 관계 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.